

1. 개정이유

법령 용어 개선을 위해 한자어인 법령용어를 우리말로 고치고, 외래 용어에 우리말 뜻을 병기해 국민들의 이해도를 제고하는 한편,

하계 성수기에 물놀이형 유원시설 이용객이 집중되어 수질관리 강화가 필요해짐에 따라, 수질검사 주체를 명확히 하고 7월과 8월 하계 성수기 수질검사 주기를 단축하여 이용객의 안전을 도모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한자어 및 외래어로 쓰던 법령 용어를 정비

- 한자용어로 된 관광숙박업자 등록대장 기재사항을 정비(안 제4조 제2호 나목)
- 한자용어로 된 관광종사원 외국어시험 종류 표기를 정비(안 제47조, 별표 15 제1호, 별표 15 제2호)
- 관광종사원 등록, 자격증 발급 관련 규정에서 한자용어를 우리말로 정비(안 제53조 제1항)
- 관광종사원 자격증 재발급 관련 규정에서 한자용어를 정비(안 제54조)
- 유원시설업 시설 및 설비 기준 중 외래용어인 원치에 우리말 뜻 병기 (별표 1의2 제1호나목)
- 전문휴양업 및 종합휴양업 시설별 일람표 중 한자용어를 정비(별지 제3호 서식)

나. 사업자가 수질검사 주체임을 명확하게 하고, 후단을 신설하여 하계 성수기 수질검사주기 단축(안 별표10의2 7호)

다. 정부조직개편에 따라 기관명 현행화(안 별표 제10의2 10호 다목)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생략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합 의 : 해당 없음

라. 기 타 : 1) 신·구조문대비표, 별첨

2) 입법예고 예정

3) 행정규제 : 규제개혁위원회와 협의 예정

관광진흥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관광진흥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2호나목 중 “총톤수·전장 및 전폭”을 “총톤수·전체 길이 및 전체 너비”로 한다.

제47조제1항제1호 중 “일어, 중국어, 불어, 독어”를 “일본어, 중국어, 프랑스어, 독일어”로 하고, 같은 항 제3호 중 “일어”를 “일본어”로 하며, 같은 조 제2항 후단 중 “불어”를 “프랑스어”로 한다.

제53조제1항 중 “탈모”를 “모자를 쓰지 않은”으로 한다.

제54조 중 “탈모”를 “모자를 쓰지 않은”으로 한다.

별표 1의2 제1호나목의 시설 및 설비기준란 (3) 중 “원치”를 “원치(중량물을 끌어올리거나 당기는 기계설비)”로 한다.

별표 10의2를 별지와 같이 한다.

별표 15 제1호 불어 중 “불어”를 “프랑스어”로 하고, 같은 호 독어 중 “독어”를 “독일어”로 하며, 같은 표 제2호 불어 중 “불어”를 “프랑스어”로 한다.

별지 제3호서식 제2호 중 “엽견”을 “사냥개”로 하고, 같은 호 중 “정고”를 “보관창고”로 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표 10의2]

물놀이형 유원시설업자의 안전·위생기준(제39조의2 관련)

1. 사업자는 사업장 내에서 이용자가 항상 이용 질서를 유지하도록 하여야 하며, 이용자의 활동에 제공되거나 이용자의 안전을 위하여 설치된 각종 시설·설비·장비·기구 등이 안전하고 정상적으로 이용될 수 있는 상태를 유지하여야 한다.
2. 사업자는 물놀이형 유기사설 또는 유기기구의 특성을 고려하여 음주 등으로 정상적인 이용이 곤란하다고 판단될 때에는 음주자 등의 이용을 제한하고, 해당 유기사설 또는 유기기구별 신장 제한 등에 해당되는 어린이는 이용을 제한하거나 보호자와 동행하도록 하여야 한다.
3. 사업자는 물놀이형 유기사설 또는 유기기구의 정원, 주변 공간, 부속시설, 수상 안전시설의 구비 정도 등을 고려하여 안전과 위생에 지장이 없다고 인정하는 범위에서 사업장의 동시수용 가능 인원을 산정하여 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하고, 기구별 정원을 초과하여 이용하게 하거나 동시수용 가능인원을 초과하여 입장시켜서는 아니 된다.
4. 사업자는 물놀이형 유기사설 또는 유기기구의 설계도에 제시된 유량이 공급되거나 담수되도록 하여야 하고, 이용자가 쉽게 볼 수 있는 곳에 수심 표시를 하여야 한다(수심이 변경되는 구간에는 변경된 수심을 표시한다).
5. 사업자는 풀의 물이 1일 3회 이상 여과기를 통과하도록 하여야 하며, 부유물 및 침전물의 유무를 상시 점검하여야 한다.
6. 의무 시설을 설치한 사업자는 의무 시설에 「의료법」에 따른 간호사 또는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에 따른 응급구조사 또는 「간호조무사 및 의료유사업자에 관한 규칙」에 따른 간호조무사를 1명 이상 배치하여야 한다.
7. 사업자는 「먹는물 수질기준 및 검사 등에 관한 규칙」 제3조 본문 및 제4조 제2항의 각호에 따라 사업장 내 풀의 수질검사를 실시하여야 하며, 다음의 수질기준을 유지하여야 한다. 다만 7월과 8월 하계 성수기의 경우에는 월 1회 이상 수질검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해수를 이용하는 경우 「환경정책기본법 시행령」 제2조 및 별표 1 제3호라목의 II등급 기준을 적용한다).
 - 가. 유리잔류염소는 0.4mg/l에서 2.0mg/l까지 유지하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오존소독 등으로 사전처리를 하는 경우의 유리잔류염소농도는 0.2mg/l 이상을 유지하여야 한다.
 - 나. 수소이온농도는 5.8부터 8.6까지 되도록 하여야 한다.
 - 다. 탁도는 2.8NTU 이하로 하여야 한다.

- 라. 과망간산칼륨의 소비량은 15mg/l 이하로 하여야 한다.
- 마. 각 풀의 대장균군은 10밀리리터들이 시험대상 5개 중 양성인 것이 2개 이하이어야 한다.
8. 사업자는 이용자가 쉽게 볼 수 있는 곳에 물놀이형 유기사설 또는 유기기구의 정원 또는 사업장 동시수용인원, 물의 순환 횟수, 수질검사 일자 및 수질검사 결과 등을 게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수질검사 결과 중 제7호가목부터 마목까지의 규정에 관한 내용은 게시하고, 같은 호 다목부터 마목까지의 규정에 관한 내용은 관리일지를 작성하여 비치·보관하여야 한다.
9. 사업자는 물놀이형 유기사설 또는 유기기구에 대한 관리요원을 배치하여 그 이용 상태를 항상 점검하여야 한다.
10. 사업자는 이용자의 안전을 위한 안전요원 배치와 관련하여 다음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 가. 안전요원이 할당 구역을 조망할 수 있는 적절한 배치 위치를 확보하여야 한다.
- 나. 수심 100센티미터를 초과하는 풀에서는 면적 660제곱미터당 최소 1인이 배치되어야 하고, 수심 100센티미터 이하의 풀에서는 면적 1,000제곱미터당 최소 1인을 배치하여야 한다.
- 다. 안전요원의 자격은 해양경찰청장이 지정하는 교육기관에서 발급하는 인명구조요원 자격증을 소지한 자, 대한적십자사나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제34조에 따른 수영장 관련 체육시설업협회 등에서 실시하는 수상안전에 관한 교육을 받은 자 및 이와 동등한 자격요건을 갖춘 자만 해당한다. 다만, 수심 100센티미터 이하의 풀의 경우에는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정하는 업종별 관광협회 또는 기관에서 실시하는 수상안전에 관한 교육을 받은 자도 배치할 수 있다.
11. 사업자는 안전요원이 할당한 구역 내에서 부상자를 신속하게 발견하여 응급처치를 이행할 수 있도록 이용자 안전관리계획, 안전요원 교육프로그램 및 안전 모니터링계획 등을 수립하여야 한다.
12. 사업자는 사업장 내에서 수영장 등 부대시설을 운영하는 경우 관계 법령에 따른 안전·위생기준을 준수하여야 한다.

신 · 구조문대비표

현행	개정안
제4조(관광사업자 등록대장) 영 제4조제3항에 따라 비치하여 관 리하는 관광사업자 등록대장에 는 관광사업자의 상호 또는 명 칭, 대표자의 성명·주소 및 사 업장의 소재지와 사업별로 다음 각 호의 사항이 기재되어야 한 다. 1. (생략) 2. 관광숙박업 가. (생략) 나. 대지면적 및 건축연면적 (폐선박을 이용하는 수상 관광호텔업의 경우에는 폐 선박의 <u>총톤수·전장 및 전폭</u>) 다. ~ 바. (생략) 3. ~ 9. (생략)	제4조(관광사업자 등록대장) --- ----- ----- ----- ----- ----- ----- ---. 1. (현행과 같음) 2. ----- 가. (현행과 같음) 나. ----- ----- ----- ---- <u>총톤수·전체 길이 및 전체 너비</u> ----- ---- 다. ~ 바. (현행과 같음) 3. ~ 9. (현행과 같음)
제47조(외국어시험) ① 관광종사 원별 외국어시험의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관광통역안내사: 영어, 일어, <u>중국어, 불어, 독어, 스페인어,</u>	제47조(외국어시험) ① ----- ----- ----- ----- 1. ----- <u>일본 어, 중국어, 프랑스어, 독일어</u> -----

러시아어, 이탈리아어, 태국어, 베트남어, 말레이·인도네시아어, 아랍어 중 1과목

2. (생략)

3. 호텔서비스사: 영어, 일어, 중국어 중 1과목

② 외국어시험은 다른 외국어시험기관에서 실시하는 시험(이하 “다른 외국어시험”이라 한다)으로 대체한다. 이 경우 외국어시험을 대체하는 다른 외국어시험의 점수 및 급수(별표 15 제1호 중 불어의 DELF 및 DALF시험의 점수 및 급수는 제외한다)는 응시원서 접수 마감일부터 2년 이내에 실시한 시험에서 취득한 점수 및 급수여야 한다.

③ (생략)

제53조(관광종사원의 등록 및 자격증 발급) ① 시험에 합격한 자는 법 제38조제2항에 따라 시험에 합격한 날부터 60일 이내에 별지 제38호서식의 관광종사원 등록신청서에 사진(최근 6개월 이내에 촬영한 탈모 상반신 반명함판) 2매를 첨부하여 한국

2. (현행과 같음)

3. ----- 일본어-----

② -----

----- 프랑스어-----

③ (현행과 같음)

제53조(관광종사원의 등록 및 자격증 발급) ① -----

----- 모자를 쓰지 않은 -----

관광공사 및 한국관광협회중앙회에 등록을 신청하여야 한다.

②·③ (생략)

제54조(관광종사원 자격증의 재발급) 법 제38조제4항에 따라 발급받은 자격증을 잃어버리거나 그 자격증이 못 쓰게 되어 자격증을 재발급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38호서식의 관광종사원 자격증 재발급신청서에 사진(최근 6개월 이내에 촬영한 탈모 상반신 반명함판) 2매와 관광종사원 자격증(자격증이 헐어 못 쓰게 된 경우만 해당한다)을 첨부하여 한국관광공사 및 한국관광협회중앙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

②·③ (현행과 같음)

제54조(관광종사원 자격증의 재발급) -----

----- 모자를 쓰지 않은 -----

-----.

유원시설업의 시설 및 설비기준(제7조제1항 관련)

현행		개정안	
1. 공통기준		1. 공통기준	
구 분	시설 및 설비기준	구 분	시설 및 설비기준
가. 실내에 설치한 유 원시설업	(생략)	가. 실내에 설치한 유 원시설업	(현행과 같음)
나. 종합유원 시설업 및 일반유원 시설업	(1) ~ (2) (생략) (3) 이용객을 지면으로 안전 하게 이동시키는 비상조 치가 필요한 유기시설 또 는 유기기구에 대하여는 비상시에 이용객을 안전 하게 대피시킬 수 있는 시설(축전지 또는 발전기 등의 예비전원설비, 사다 리, 계단시설, <u>원치</u> , 로프 등 해당 시설에 적합한 시설)을 갖추어야 한다. (4) (생략)	나. 종합유원 시설업 및 일반유원 시설업	(1) ~ (2) (현행과 같음) (3) 이용객을 지면으로 안전 하게 이동시키는 비상조 치가 필요한 유기시설 또 는 유기기구에 대하여는 비상시에 이용객을 안전 하게 대피시킬 수 있는 시설(축전지 또는 발전기 등의 예비전원설비, 사다 리, 계단시설, <u>원치(중량 물을 끌어올리거나 당기 는 기계설비)</u> , 로프 등 해 당 시설에 적합한 시설) 을 갖추어야 한다. (4) (현행과 같음)
2. ~3. (생략)		2. ~3. (현행과 같음)	

[별표 15] <개정 2017. 2. 28.>

다른 외국어시험의 종류 및 합격에 필요한 점수 또는 급수(제47조 관련)

현행			개정안		
1. 다른 외국어시험의 종류			1. 다른 외국어시험의 종류		
	구 분	내 용		구 분	내 용
영어	토플(TOEFL)	(생 략)	영어	토플(TOEFL)	(현행과 같음)
	토익(TOEIC)			토익(TOEIC)	
	텡스(TEPS)			텡스(TEPS)	
	G-TELP			G-TELP	
	(Level 2)			(Level 2)	
	FLEX			FLEX	
	PELT(main)			PELT(main)	
일본어	JPT	(생 략)	일본어	JPT	(현행과 같음)
	日檢			日檢	
	(NIKKEN)			(NIKKEN)	
	FLEX			FLEX	
	JLPT			JLPT	
중국어	HSK	(생 략)	중국어	HSK	(현행과 같음)
	FLEX			FLEX	
	BCT			BCT	
	CPT			CPT	
	TOCFL			TOCFL	
불어	FLEX	(생 략)	프랑스어	FLEX	(현행과 같음)
	DELF			DELF	
	DALF			DALF	
독어	FLEX	(생 략)	독일어	FLEX	(현행과 같음)
	독일어 능력 검정시험			독일어 능력 검정시험	
	독일어 능력 검정시험			독일어 능력 검정시험	
스페인어	FLEX	(생 략)	스페인어	FLEX	(현행과 같음)
	DELE			DELE	
러시아어	FLEX	(생 략)	러시아어	FLEX	(현행과 같음)
	TORFL			TORFL	

이탈리아어	CILS
	CELI
태국어, 베트남어, 말레이· 인도네시아어, 아랍어	FLEX

이탈리아어	CILS
	CELI
태국어, 베트남어, 말레이· 인도네시아어, 아랍어	FLEX

2. 합격에 필요한 다른 외국어시험의 점수 또는 급수

2. 합격에 필요한 다른 외국어시험의 점수 또는 급수

시험명	자격구분	관광 통역 안내사	호텔 서비스사	호텔 관리사	호텔 경영사	만점 / 최고 급수
영어	TOEFL(CBT)	(생략)				
	TOEFL(IBT)					
	TOEIC					
	TEPS					
	G-TELP (Level 2)					
	FLEX					
	PELT(main)					
일본어	JPT					
	日檢(NIKKEN)					
	FLEX					
	JLPT					
중국어	HSK					
	FLEX					
	BCT (B)					
	(B)L&R					
	CPT					
불어	TOCFL					
	FLEX					
	DELF					
독일어	DALF					
	FLEX					

시험명	자격구분	관광 통역 안내사	호텔 서비스사	호텔 관리사	호텔 경영사	만점 / 최고 급수
영어	TOEFL(CBT)	(현행과 같음)				
	TOEFL(IBT)					
	TOEIC					
	TEPS					
	G-TELP (Level 2)					
	FLEX					
	PELT(main)					
일본어	JPT					
	日檢(NIKKEN)					
	FLEX					
	JLPT					
중국어	HSK					
	FLEX					
	BCT (B)					
	(B)L&R					
	CPT					
프랑스어	TOCFL					
	FLEX					
	DELF					
독일어	DALF					
	FLEX					

	독일어능력 검정시험			독일어능력 검정시험	
스페인어	FLEX			FLEX	
	DELE			DELE	
러시아어	FLEX			FLEX	
	TORFL			TORFL	
이탈리아 어	CILS			CILS	
	CELI			CELI	
태국어, 베트남어, 말레이· 인도네시아어, 아랍어	FLEX			FLEX	